부가가치세가 뭐예요?



지하식 세무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법학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주요경력
-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2001~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세무회계 강사(2006~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및 세무회계강사(2002~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감사 (2012~현재)
-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 감사(2013~현재)
- 서울인쇄조합 세무고문(2013~-현재)

e. tax0246@naver.com
m. 010-3350-0246



지난 호까지 회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호에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장님이 꼭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꼼꼼 사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을 취해 보았습니다.

김꼼꼼 사장님 ; 부가가치세 낼 때만 되면 아까워 죽겠어요! 인쇄단가는 올라가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낼 때만 되면 안내도 될 돈 나가는 느낌입니다. 뭐 방법이 없나요?

지하식 세무사 : 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단가에다가 판매단가의 10%를 얹어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내는 개념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내는 건데요. 충분히 마진을 더해서 판매단가를 매길 수가 없다 보니까 내 돈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마진이 안되면 팔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 돈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무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렵지만 내 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것이다라고 마음을 잡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꼼꼼 사장님 : 네! 정말 말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돈 쓸일은 또 그렇게 많습니다. 하하.

지하식 세무사 : 그렇지요. 성장하는 회사와 꼼꼼이 자리를 잡아나가는 회사의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리면요. "세금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 통장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간격으로 집계하여 넣어 두는 것입니다. 급하면 쓰게 되지만 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낫겠습니다.

김꼼꼼 사장님 : 아! 그렇군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알아 두면 좋은 것 말씀해 주세요?

지하식 세무사 : 모든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돈이 없어서 납부는 못해도 최소한 신고는 하자. 신고를 하려면 신고납부기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둘로 나누어서 상반기를 제1기라고 하고, 하반기를 제2기라고 합니다. 각 각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그러니까 1기는 7월25일이고, 2기는 다음연도 1월25일인 것이지요.

김꼼꼼 사장님 : 맞아요. 안내도 될 돈이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이 실무를 하다가 안타까운 인쇄업계의 세무현실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하식 세무사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것이지요. 납부세액이 줄어들려면 매출액이 적어지거나, 매입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행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샀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적발시에 가산세가 무려 40%가 적용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기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마저 과세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세상이므로 과거처럼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꼼꼼 사장님 : 이번엔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좀 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지하식 세무사 :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간혹 매입을 해 오는 경우에도 무자료로 싸게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주더라도 세금계산서 받는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공과금과 같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업자등록증 보내서 명의전환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아직도 안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장님은 하시고 계신가요?

김꼼꼼 사장님 : 지난번 세무사님 교육 후에 바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서, 사업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핸드폰 요금 다 명의전환했습니다. 매월 1,000,000원 정도 되니까 1년에 부가가치세로 1,200,000원 절약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지하식 세무사 :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장님도 많으신데 김사장님은 정말 꼼꼼하시군요. 기업을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사장님 차가 모닝 아닌가요?

김꼼꼼 사장님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지하식 세무사 : 모닝 이하의 승용차, 즉 1,000cc이하의 승용차나 8인승 초과승용차와 화물차 등의 구매시 부가가치세와 기름값, 주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꼼꼼 사장님 : 제가 배달을 직접 하기 때문에 주유비용이 매월 1,000,000원이 넘게 나갑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지하식 세무사 : 네,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시거나 그게 번거로우면 카드전표를 세무사무실에 보내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것도 1년이면 1,200,000원의 부가가치세가 절약되겠네요.

김꼼꼼 사장님 : 지 세무사님 덕분에 1년에 부가가치세를 2,400,000원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크겠지요. 감사합니다.

지하식 세무사 : 과찬입니다. 하하.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고 대박나세요!!!

〈연재를 마칩니다〉

